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법률 제17489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할횟수는”을 “분할횟수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2항제6호 중 “제22조의2제5항”을 “제22조의2제6항”으로, “가족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제8호 중 “제22조의2제2항”을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가족이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유치원 등의 휴업·휴교·휴원 또는 자녀의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9조제2항제8호).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식당 신축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100, 1107-3	135,571	4,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8. 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4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음원 수집장비 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0 음원수집장비 시설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	2,191,181	53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세현리, 산1-1	8,366,177	18
	계		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